

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신청인 (양도자)	① 성명	② 주민등록번호
	③ 주소 (전화번호 :)	

거주 주택 (양도 주택)	④ 소 재 지			
	⑤ 주택 면적(㎡)	⑥ 토지 면적(㎡)	⑦ 취득일	⑧ 양도일
	⑨ 거주기간(년 월 일 ~ 년 월 일)		⑩ 양도가액	

- ⑪ []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내역
⑫ []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등이 임대기간요건 등을 미충족한 경우 내역

구 분	소유자			장기임대주택 등 내역									
	성명 (13)	양도 자와 의 관계 (14)	주민 등록 번호 (15)	소 재 지 (16)	취 득 일 (17)	주 택 면적 (18)	토 지 면적 (19)	임대 개 시 일 (20)	임대 단 기 시 간 (21)	세법상 사업자등록		시군구청 임대등록	
										등록일 (22)	등록호수 (23)	등록일 (24)	등록호수 (25)
장기임대 주택(26)													
장기 어린이집 (27)													

임대내역(28)							
구 분	임차인		임대료		임대기간		
	성명	생년월일	보증금	월세	개시일	종료일	기간
최초 임대							
2회 임대							

직전거주 주택보유명세 (29)	소재지	양도일
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
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4항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.

신고인
세무대리인
(관리번호)

년 월 일
(서명 또는 인)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없 음
------	-------	------------

신고인 제출서류	1.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.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사본 1부 ※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그 사본은 주민등록 전입세대의 열람내역 제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. 3.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사본 1부 4.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 사본 1부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	1. 주민등록표 등본·초본 2. 거주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·건축물대장 3. 장기임대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토지·건축물대장 등본 4.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에 따른 어린이집 인가증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1호 및 제4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작성 방법

- ⑨란: 양도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한 날 이후 양도자의 거주기간을 적습니다.
- ⑩란: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- ⑪란: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한 경우 [V] 합니다.
- ⑫란: 거주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, 장기어린이집의 임대기간요건 또는 운영기간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[V] 합니다.
- ⑬란, ⑭란, ⑮란: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을 소유하고 있는 자의 성명 및 양도자와의 관계,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.
- ⑯란: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임대를 개시한 날,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을 적습니다.
- ⑰란: 임대 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적으며 2011.10.14. 이전에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인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습니다.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시작한 날의 기준시가를 적습니다.
- ⑱란, ⑲란: 임대주택인 경우 사업자등록일과 사업자등록 시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.
- ⑳란, ㉑란: 임대주택인 경우 시군구청 임대등록일과 임대 등록된 호수를 적습니다.
- ㉒란, ㉓란: 거주주택 양도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는 ㉒란에 소재지 등을 적고, 장기어린이집인 경우에는 ㉓란에 소재지 등을 적습니다.
- ㉔란: 장기임대주택에 대해 거주주택의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한 내역을 적습니다.
- ㉕란: 양도주택이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20항의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인 경우에만 적습니다.

210mm×297mm[백상지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